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H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내·외부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DMZ 구간에 위치한 서버가 생성 [*] 한 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내부망 서버로 전송 ^{**} 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위반인지 여부 *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최신 법령정보 및 업무규정 변경사항을 수집·가공(xml, json) **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송수신 방식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판단이유	 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해야 하며,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). 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외부통신망에 해당하는 DMZ 구간에 위치한 서버에서 생성한 파일을 망연계솔루션을 통하여 내부통신망으로 반입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○ 금융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간 자료 교환을 위해 보조기억장치 또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고, ○ 이때 외부통신망에 있는 업무자료에 대하여 악성코드 검사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하여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서버 간에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것은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여전히 분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.

- ***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